

의안번호	제 32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5년 12월 11일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320

제출연월일 : 2015년 12월 1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1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 종료(2015.12.31.)에 따라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 :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나. 추진 계획

- 수탁기간 : 2016.1.1. ~ 2017.12.31.(2년간)
 - 수탁기관 : 청소년(성교육)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및 법인
 - ※ 現 수탁기관 : 사)청주여성의전화('13.9.6~'15.12.31)
 - 수탁방법 : 공모 선정 또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협약
 - ※ 재계약시 공모절차 생략,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여성가족부 지침)
 - 위탁주요사무
 -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원거리 지역 찾아가는 성교육(성교육 버스 활용)
 -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각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 위기청소년 성상담 및 사이버 성상담
 - 기타 청소년기본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협약사무
- ※ 위탁 기본 계획 별첨

3. 참고 사항

가. 現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운영 현황

- 센터 설립 경과
 -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검토 : '13. 1. 31
 - 국고보조 신청 및 선정 : '13. 2. 5, '13. 4. 17
 - 수탁단체 공모(2회) : '13. 7. 26 ~ 8. 2, '13. 8. 5 ~ 8. 9
 - 심사·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13.8.13(심사), 9.6(협약체결)
- 수탁기관 : 사)청주여성의전화(대표 하숙자)
 - 현, 위·수탁 기간 : '13. 9. 6 ~ '15.12.31
- 예산액('13~'15년) : 602백만원(국비50%, 도비50%)
 - '13년 : 308백만원, '14년 : 143백만원, '15년 : 151백만원
- 센터위치 :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7(황금빌딩 3층)
- 인력·시설 : 1개팀 5명(강사4, 기사1) / 버스 1대(45인승)

나. 관계법령 : 별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1(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대상사무의 기준등)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위탁 계획



여성정책관실

충청북도 청소년성문화센터(이동형) 위탁계획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이 어려운 도내 원거리지역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을 위해 사)청주여성의전화와 체결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계획 임.

I 사업연혁

-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검토 : '13. 1. 31
- 국고보조 신청 및 선정 : '13. 2. 5, '13. 4. 17
- 수탁단체 공모(2회) : '13. 7. 26 ~ 8. 2, '13. 8. 5 ~ 8. 9
 - 신청단체 : 사)청주여성의 전화
- 심사·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13.8.13(심사), 9.6(협약체결)

II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사)청주여성의전화(대표 : 하숙자)
 - 협약기간 : 2013. 9. 6 ~ 2015. 12 .31(2년 4개월)
- **주요사업**
 - 이동형 성교육 버스 활용, 도내 원거리지역 방문 성교육
 - 고정형 성문화센터(청주, 충주) 이외지역 중점추진
 - 올바른 性 가치관 함양을 위한 체험위주, 맞춤형 교육
- **지원예산**('13~'15년) : 602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13년 : 308백만원, '14년 : 143백만원, '15년 : 151백만원
- **인력 및 시설** : 인력 5명(강사4, 기사1), 버스(45인승) 1대

Ⅲ 재위탁 기본방향

〈 주요검토 사안 〉

- ◆ 現, 수탁기관(청주여성의전화) 재계약(기간연장)
 -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 종합검토
- ◆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수탁기관 신규공모·위탁계약 체결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규칙) 이행

□ 위·수탁 주요내용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1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위탁기간** : 2016. 1. 1 ~ 2017. 12. 31(2년간)
- **위탁사무**
 - 고정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원거리 지역 이동형 성문화센터 운영(*성교육 버스 활용)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체험관 및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위기청소년 성상담 및 사이버 성상담활동 등

【 인력 및 예산현황 】

소요인력 : 5명	체험관 : 1대	'16년도 예산액(천원)	비 고
강사(4), 기사(1)	45인승 버스	137,482	

□ 위·수탁 운영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가능
- 청소년단체 위탁 운영할 경우 공개모집 선정(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 고려)
-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IV 수탁기관 선정 추진일정

1 성문화센터(이동형)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2월 중

2 성문화센터(이동형) 수탁기관 선정방침 수립 : 12월 중

- 위탁방법, 위탁기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현 수탁기관이 재운영 의사가 있는 경우 : 재협약 검토
 - 현 수탁기관이 재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 공개모집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2월중

- 구성인원 : 6명 내외(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당연직 : 도 여성정책관

- 위촉직 : 5명 내외(청소년복지 관련 학계, 기관·단체 등 전문가)

-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

4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12월 중

V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 후 선정 된 수탁기관 홈페이지 등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